##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99 발의연월일: 2022. 8. 18.

발 의 자:이태규·박덕흠·배준영

서병수 · 유상범 · 이명수

정우택 · 조명희 · 최연숙

최재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건수는 2018년 2, 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으로 매년 2천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침해행위는 점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

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 하지 않은 상태임.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생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에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제14조제2항·제18조 및 제19조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방안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여야한다.

제18조제6항 중 "제19조제2항에"를 "제19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교육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에 해당 조치 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

음 각 목의 분쟁"을 "제2항에 따른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를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로 한다.

-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3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 2. 제3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3. 그 밖에 교육지원청의 장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의 작성·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	2
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학생생활지도 방안
<u>4.</u> (생 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	한 조치) ①
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	
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	
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 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 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 다. <단서 신설>

- 1. ~ 4. (생 략)
- ② ~ ⑥ (생 략)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 전 한 조치 등) ① ~ ⑤ (생 략)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⑦·⑧ (생 략) <신 설>

<u>다만, 제3항에 따른 관할</u>
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
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데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
한 조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6
- <u>제19</u> 조제3항에
<u>.</u>
⑦・⑧ (현행과 같음)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⑨ (생략)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 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 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생략)
-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 가.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 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 니한 분쟁의 조정 나.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 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

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

학생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 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에 해당 조치 내용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① (현행 제9항과 같음)

운영) ① -----

- 1. (현행과 같음)
- 2. 제2항에 따른 시·군·구교 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삭 제>

<삭 제>

<u>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u> <u>정</u>

3. (생략)

<신 설>

3. (현행과 같음)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3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 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 2. 제3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 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 련된 분쟁의 조정
- 3. 그 밖에 교육지원청의 장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군· 구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략)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 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4</u>	시·도교권보호위원
회,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
<u>및</u>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